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8
----------	-------

발의연월일 : 2025. 08. 27.

발 의 자 : 서왕진 · 황운하 · 김준형
강경숙 · 최혁진 · 박은정
차규근 · 정춘생 · 김재원
신장식 · 김선민 · 이해민
백선희 · 김종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재 농업·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란 국가적 과제 또한 시급한 상황인 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업인의 참여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보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균형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이익공유 증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농업법인 및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신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1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이용·보급, 교육, 상담, 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특례를 둠(안 제22조).

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음(안 제23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보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와 부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5.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으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균형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이익공유 증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농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경작권 상실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지훼손, 생산량 감소 등 식량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법」 제28조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하 “농업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제외한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주된 사무소가 설립된 자로서 직접 소유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

3. 주민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하 “주민참여조합”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령,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등의 수확량에 3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등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이 직접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는 방식
2. 주민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는 방식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주민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우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전지구 조성계획을 협의·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 일조량·전력계통 등 발전 여건, 작물 영향 등 농지 보전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농업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1. 발전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시·

도지사의 신청 절차 및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 사전조사, 공청회·설명회 등 의견 청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농업법인 및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융자

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기 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신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8조(송·배전설비의 지원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한 첨단 영농기술 개발 및 스마트 팜 조성
4.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사용을 위한 표준 시설 및 설치 규격과 표준 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이용·보급, 교육, 상담, 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터”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예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